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 · 시정 요구

제 목 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기 관 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훈계대상자 ① 광주광역시 ○○○○과 지방○○○○ ○○○

② 광주광역시 광산구 ○○과 지방○○○○○ ○○○
(구 ○○○○과)

내 용

지방○○○○ ○○○은 2017. 1. 24.부터 현재까지 광주광역시 ○○○○과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인 ‘○○동 ○○○○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업무 실무담당자로, 지방○○○○○ ○○○은 2014. 8. 31.부터 현재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과(구 ○○○○과)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광산구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의 사업계획 승인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생태계보

전협력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부서)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기관(부서)에 통보하고, 부과·징수기관(부서)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인·허가 등의 내용에 관한 통보의 수령, 부과금액·납부기간 등에 관한 통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 징수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1. 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광주광역시 ○○○○과)

광주광역시 ○○○○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인 ‘북구 ○○동 ○○○○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2017. 5. 22. 승인·고시(광주광역시 고시 제○○○○-○○○호)하였다.

사업면적 99,481㎡의 ‘북구 ○○동 ○○○○ 주택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면적 3만㎡ 이상 사업이다.

따라서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승인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7. 5. 22.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한 이후 정부합동 감사 사전조사 시(2017. 8. 28.~9. 8.)까지도 ○○○○과에 이를 통보¹⁾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21,106,800원이 부과·징수가 되지 않았다.

[표1]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현황

<단위 : m², 원>

사업주체	사업명	소재지	전략평가 협의 회신일	사업계획 승인 고시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사기간
					사업면적	부과금액	
(주)○○○○ ○○○	○○동 ○○○○ 주택건설사업	북구 ○○동 000번지 일원	' 17.1.18.	' 17.0.00.	99,481	21,106,800	' 17.7.1. ~ ' 19.12.31.

※ 광주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결국, 지방○○○○ ○○○은 개발사업을 승인한 이후 20일 이내에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징수 부서에 북구 ○○동 ○○○○ 주택건설사업의 사업내용 등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21,106,800원을 부과·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실무책임이 있다.

2. 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광산구 ○○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과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광산구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의 사업계획을 2017. 4. 28. 승인·고시(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호)하였다.

1) 2017. 9. 11. 사업계획 승인사항 통보

사업면적 95,141㎡의 ‘광산구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면적 3만㎡ 이상 사업이다.

따라서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승인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환경생태국 환경정책과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7. 4. 28. ‘광산구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의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한 이후 정부합동감사 시(2017. 9. 13.~9. 29.)까지도 ○○○○과에 이를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56,253,000원이 부과·징수가 되지 않았다.

[표2]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현황

<단위 : ㎡, 원>

사업주체	사업명	소재지	소규모 평가 협의 회신일	사업계획 승인 고시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사기간
					사업면적	부과금액	
○○○○ ○○(주)	광산구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광산구 ○○동 ○○○-○번지 외 28필지	’ 17.4.27.	’ 17.4.28.	95,141	56,253,000	’ 17.5. ~ , 19.6.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출자료 재구성

결국 지방○○○○○ ○○○은 개발사업을 승인한 이후 20일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부서에 광산구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의 사업내용 등을 통보하지 않아 생태계보전협력금 56,253,000원을 부과·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실무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개발사업 승인부서에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필요한 사업내용 등을 환경생태국 환경정책과에 통보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